

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'99-27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폐지사유

-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, 농지개량사업(경지정리) 주민 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조례의 존치가 불필요 하므로 폐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로 현행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

폐지근거

- 농어촌정비법 (법률 제4823호 '94. 12. 22)
- 농지개량조합법 (법률 제5077호 '95. 12. 29)

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